

## 용도변경승인신청서

(앞쪽)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허가 (신고) 사항	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
	소재지	

변경신청 사항	구 분	변경 전	변경신청	비 고
	면적(m <sup>2</sup> )			
	용도(목적)			
	명의			

###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

시·군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용도변경 전 (m <sup>2</sup> )	변경신청 (m <sup>2</sup> )
	읍·면	리·동					

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**  
**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**    귀하  
**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**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</li><li>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(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,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</li><li>피해방지사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(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·폐수 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</ol>	수수료 5천원
------	--	------------

